



대법원 지방세관련 판례

심 영 택

대법원 조사관실 행정자치부파견 사무관

본 판례는 필자가 대법원에 파견된 2001. 7월 이후부터 2003. 9월까지 판시된 대법원의 지방세 관련 판례 중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관한 것을 제외한 것 중 지방세담당공무원 및 납세자들이 꼭 알아두었으면 하는 중요사항에 대해 당해 사건개요를 포함하여 심급별 판결결과, 판결내용을 요약 작성한 것임.

○ 대상기간 : 2001. 10월 ~ 2003. 9월

1. 신고납세 방식인 취득세의 조세채무 확정

《 개 요 》

□ 당 사 자

- 원고(피상고인) : 황○○
- 피고(상고인) : 서울특별시 ○○구청장

□ 사건개요

- 원고는 1996. 10. 11. 피고로부터 서울 ○○구 ○○동 189의 6 대 501.20㎡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설계변경을 거쳐 최종적으로 지어진 건물은 1층 296.84㎡, 2층 내지 8층 각 300.46㎡, 9층 284.74㎡, 지1층 394.58㎡, 지2층 343.52㎡이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 원고는 1998. 10. 13.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명의를 원고로부터 주식회사 ○○실업(이하 ‘○○실업’이라고만 한다)으로 변경하였다.
- 피고는 1998. 11. 4. 완공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을 작성하면서 그 소유자를 위와 같이 변경된 건축허가 명의자인 ○○실업으로 등록하였다.
- 이에 원고는 1998. 12. 3.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원시취득에 대하여 건축허가명의자인 ○○실업을 대신하여 이 사건 건물의 과세표준 2,874,698,800원에 지방세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7,493,970원과 농어촌특별세 5,749,390원, 합계 63,243,360원을 신고납부하였고(위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 의하면 신고납부방식에 의한 조세의 경우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게 되므로, 이하 원고의 위 신고납부를 ‘이 사건 제1차 처분’이라 한다), 피고는 같은 날 이를 수납하였다.
- 그 후 원고는 1999. 7. 19.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에 따라 같은 달 22. 피고에게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63,243,360원을 제차 신고납부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2차 처분’이라 한다), 피고는 같은 날 이를 수납하였다.

※ 관련규정

- 지법(1999. 8. 31. 법률 제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제104조, 제105조, 제112조 제1항
- 지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 심급내역

- 대법원 : 원고패(파기환송)
- 서울고등법원 2001. 3. 21. 선고 2000누12401 판결 : 원고승
- 서울행정법원 2000. 8. 31. 선고 2000구6182 판결 : 원고패

※ 환송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2. 10. 29. 선고 2002누4497판결 : 원고패

○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두2638판결[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1996. 10. 11. 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를 하던 중 1998. 10. 11.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권리를 소외 주식회사 ○○실업(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양도하여 같은 달 13. 그 건축허가 명의를 소외 회사 명의로 변경된 사실, 그 후 위 양도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어 원고가 그의 자금으로 이 사건 건물을 완하였으나, 그 건축허가 명의를 소외 회사로 되어 있어 피고는 1998. 11. 4.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소외 회사에게 사용승인을 하고 원고는 1998. 12. 3. 피고에게 소외 회

사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이하, 이 사건 제1차 신고납부라 한다)한 사실, 한편 원고는 위 양도가 소급적으로 무효라는 이유로 소외 회사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99가합25667호로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하여 1999. 6. 4. 승소판결을 받고 그 때쯤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이에 기하여 같은 해 7. 19.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같은 달 22. 피고에게 그 명의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이하 이 사건 제2차 신고납부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그의 자금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원고가 원시 취득한 것이라 할 것이나, 이 사건 건물의 원시취득자인 원고가 위와 같이 제1차 신고납부를 한 이상, 이로써 이 사건 건물의 원시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은 이미 적법하게 납부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실질적인 이중과세를 막고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2차 신고납부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이 사건 취득세 등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조세채무가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380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소외 회사 명의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한 이상 소외 회사의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확정되었고, 원고가 이를 사실상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외 회사의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로써 원고의 이 사건 건물의 원시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이하 생략)

※ 관련법령

<지방세법(1999. 8. 31. 법률 제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부동산 :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4. 건축물,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한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9. 건축 : 건축물을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것을 말한다.

○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다만, 그 취득물건을 다른 도로 이전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지방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73조 (취득의 시기 등)

④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 참고사항 : 대법원 선고내용과 판단을 달리한 서울고등법원의 선고내용을 요약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서울고등법원 2001. 3. 21. 선고 2000누12401판결)

1. 기재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신축 중

이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양도계약은 매수인인 ○○실업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서 제4조의 약정에 따라 소급적으로 실효되어 무효가 되었다 할 것이므로 비록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허가명의자가 ○○실업이라 하더라도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은 건축자금을 제공한 원고가 원시취득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결론은 일반건축물대장에 등록된 소유자와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다르다 하여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2. 한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일로 보고 있는 지방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서상 건축허가명의자인 ○○실업 명의로 부과될 이 사건 제1차 처분에 따른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이 사건 건물의 원시취득자인 원고가 사실상 납부한 이상, 이로써 이 사건 건물의 원시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는 이미 적법하게 납부된 것으로 보는 것이 실질적인 이중과세를 막고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실업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내려진 후에 원고가 자기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을 가지고 마치 새로운 원시취득 또는 ○○실업으로부터의 승계취득으로 보고 지방세법 소정의 취득에 다시 해당한다고 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제2차 처분(명확하게는 원고의 신고납부를 뜻한다)은 위법하다 하겠다.

2. 지방세 감면법인에 대한 감면 지방세 추징

- 농업협동조합의 고유업무 범위 등 관련

《 개 요 》

□ 당 사 자

- 원고(상고인) : ○○농업협동조합
- 피고(피상고인) : 부산광역시 ○○구청장

□ 사건개요

- 원고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으로 1995. 4. 20.경 부산 ○○구 ○○동 494-4 대 92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다음, 그 위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2,594.655㎡의 ○○지소 사옥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97. 3. 21.경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 같은 해 4. 14. 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쳤다.
- 원고는 건물완성 이후 이 사건 건물을 업무시설(금융업소) 등으로 사용하는 한편, 3층을 강당(회의실 또는 비정기적인 예식장)으로, 4층을 문화센터(이하 이 사건 문화센터라 한다)로 이용하여 왔는데,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라 하여 취득세,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를 면제받았다.
- 피고는 1999. 7. 1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3층을 예식장 및 미용실로, 4층을 문화센터로 이용하는 것은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 중 위 3, 4층과 그 면적에 비례한 1층 주차장면적 등에 해당하는 가액 및 그에 상응한 이 사건 토지 부분의 가액에 대해 관계 법령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취득세(가산세 포함) 36,911,580원, 농어촌특별세(가산세 포함) 3,383,540원, 등록세 34,337,550원 및 교육세 6,295,210원을 각 추징하였다.
- 원고가 위 추징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자, 행정자치부장관은 2000. 4. 26.경 원고가 이 사건 건물 3층은 고유업무에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그 부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액하는 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같은 해 5. 22.경 당초 부과처분을 취득세 20,951,320원, 농어촌특별세 1,920,530원, 등록세 19,490,300원, 교육세 3,573,210원(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각 가산세 포함)으로 각 감액경정(이하 감액경정된 1999. 7. 14.자 추징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관련규정

- 지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0조 제2항 제1호
- 농업협동조합법(1999. 9. 7. 법률 제60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 심급내역

- 대법원 : 원고패(상고기각)
- 부산고등법원 2001. 11. 16. 선고 2001누1079 판결 : 원고패(항소기각)
- 부산지방법원 2001. 3. 22. 선고 2000구5203 판결 : 원고패

○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두10646
판결[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심은 내세운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으로서 1995. 4. 20.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다음, 그 위에 ○○지소 사옥으로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2,594.655㎡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1997. 3. 21.경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 같은 해 4. 14. 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건물의 4층을 문화센터(이하 이 사건 문화센터라 한다)로 이용하여 왔는데,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290조 제2항 제1호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판시와 같은 경위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교육세를 부과·고지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1) 이 사건 문화센터에는 노래교실, 에어로빅교실 등 여러 강좌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 이용대상은 대부분 조합원, 준조합원이며, 그들로부터 다른 단체가 운영하는 유사한 강좌의 이용료보다 훨씬 싼 실비변상 수준의 사용료를 받

고 있을 뿐이어서 실질적으로는 적자 운영되고 있는 실정인 점 등을 감안하면, 이를 영리목적을 위한 사업이라고 볼 수 없고, 고유목적사업인 조합원의 복지 및 후생의 향상을 위한 사업 또는 교육 및 지도사업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고, (2) 문화센터 이용객 중 비조합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5.13%에 불과하므로 구 농업협동조합법(1999. 9. 7. 법률 제60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협법이라 한다) 제59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는 도시지역을 위주로 신용사업을 펼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문화센터의 개설은 이러한 신용사업에 연계된 원고의 고유업무 관련 교육·지도사업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이상과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건물 4층 부분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내세운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이 사건 문화센터를 개설하여 노래교실, 한국무용교실, 에어로빅교실, 수지침교실, 한문교실 등의 강좌를 열

어 운영하여 왔는데, 수강생은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회원의 자격은 부산시내에 거주하는 시민으로 하며, 원고에게 적금 등을 가입한 고객은 강좌당 금 5,000원의 할인혜택을 주는 한편, 한번 회원증을 발급 받은 사람은 평생회원이 되며 강좌별 수강생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농협사업과 연계, 지속 관리토록 하는 회원관리지침을 마련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문화센터를 운영하면서 수강생들로부터 일정액의 수강료를 받아 강사료, 감가상각비, 업무추진비 등에 충당하여 왔는데, 그 수강료는 백화점이나 사회복지관 등 다른 단체에서 지급 받는 액수와 비슷하거나 약간 저렴한 수준이며, 수강료 수입으로 1997년 이후 매년 총 금 50,000,000원 이상을 올린 사실, 1997. 3.경부터 1999. 4.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문화센터를 이용한 3,584명 중 조합원 및 준조합원이 3,400명, 비조합원이 184명을 차지하였는데, 원고의 내부조직 현황은 조합원의 숫자가 630명에 지나지 않는 반면 원고에 의하여 '조합의 구역 안에 거주하는 개인으로서 그 조합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된' 준조합원은 42,818명에 이른 사실을 인정한 다음, 판시의 사실관계 및 관계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문화센터에 대한 1997. 3.경부터 1999. 4.경까지 사이의 이용객 구성비율상 조합원과 준조합원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는 하지만, 원고 조합의 내부조직상 조합원수는 준조합원수의 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준조합원이 이용객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준조합원은 원고 조합의 구역 안에 거주하

는 개인 중에서 원고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이므로 사실상 구역 내의 모든 거주자가 그 대상이 될 뿐 아니라, 이 사건 문화센터 운영요강상 회원의 자격을 부산시내에 거주하는 시민으로만 밝히고 있을 뿐이어서 그 이용자격에 별다른 제한이 없는 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여타 문화강좌 등과 다를 바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문화센터를 운영하는 주된 목적이 자신이 운영하는 신용사업과 연결지어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증대를 꾀하는 데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다가 이 사건 문화센터의 강좌개설내용, 수강료 수입현황, 이용객 수 등의 운영실태와 관계 법령의 목적 등을 아울러 감안하면, 원고의 이 사건 문화센터 운영은 고유 목적 사업에 속하는 교육·지도사업이나 복지후생사업이 아니라, 조합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조합원과 관계없이 조합 자체의 영리를 도모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위 문화센터의 이용료 수입 자체만으로 별다른 이익을 남긴 바 없다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고, 따라서 원고는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건물의 4층 및 그 부속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구 농협법 제14조는 지역조합은 조합원의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원고 조합의 정관(갑 제5호증의 4) 제2조도 같은 취지를 조합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농협법 제5조 제2항은 조합은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금지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라 함은 조합 자체의 경제적 이윤을 얻기 위한 업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구성원인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여 조합의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과 조합원과 관계없는 사업경영으로 조합 자체의 영리를 도모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이므로, 조합이 조합원과 관계없이 조합 자체의 영리를 도모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것은 위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서 고유 목적에 속하는 사업의 경영이라 할 수 없고, 이를 위한 부동산의 취득은 구 지방세법 제290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과세면제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8. 4. 28. 선고 97누7905 판결 참조).

관계 법령과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하여 관련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의 이 사건 건물 4층의 문화센터 운영은 원고의 고유 목적사업에 속하는 교육·지도사업이나 복리후생사업이 아니라 조합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볼 것이어서 원고가 그 취득 부동산을 원고 고유업무에 직

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사실인정을 잘못 하거나 관련법규를 잘못 해석 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관련법령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0조(공공법인에 대한 과세면제) ② 다음 각호의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제외한다)

※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위 같은 취지의 규정이 제266조 제5항에 규정되어 있음.

3. 공유수면매립공사로 취득한 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개 요》

□ 당사자

- 원고(피상고인) : 한국전력공사의 소송수계인 한국○○발전 주식회사
- 피고(상고인) : ○○군수

□ 사건개요

- 원고는 1994. 3. 31. 소외 ○○산업개발주식회사와 사이에, 부지매립공사(CC-02)를 금 8,177,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이하 같다)에 계약(계약번호 제94-1018-2호) 체결(1994. 8. 8. 착공, 1997. 5. 16. 준공, 1997. 5. 29. 준공검사)
 - 비과세대상공사비 및 부가가치세를 각 제외한 과세대상공사비는,
 - 직접공사비(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포함)로서 금 7,738,454,500원(= 도급분 금 7,731,500,000원 + 회사분 금 6,954,500원),
 - 간접공사비(조사측량비, 중장비관리비, 건설비이자, 건설사무실 설치비 등)로서 금 719,060,115원(= 도급분 금 718,413,901원 + 회사분 646,214원)
 - 합계 금 8,457,514,615원으로 정산
- 또한 원고는 같은 날(1994. 3. 31.) 같은 회사와 사이에 호안축조공사(CC-03)를 금 1,829,471,000원에 계약(계약번호 제94-1018-111-1호) 체결(1995. 3. 8. 착공, 1996. 7. 11. 준공, 1996. 7. 22. 준공검사)
 - 총공사비 금 1,793,237,641원으로 정산
- 원고는 역시 같은 날(1994. 3. 31.) 같은 회사와 사이에 연료하역부두축조공사(CC-04)를 금 21,215,370,000원에 계약(계약번호 제94-1018-110-1) 체결(1994. 11. 8. 착공, 1996. 9. 7. 준공, 1996. 9. 19. 준공검사)
 - 총공사비 금 25,678,694,003원으로 정산
- 원고는 1998. 1. 17.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나, 신고 납부한 과세표준에 도로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바로잡아 산출한 과세대상 총공사비 8,457,514,615원을 기초로 하여 계산한 취득세 금 159,599,050원, 농어촌특별세 금 15,959,900원 등 합계 금 175,558,950원을 공제한 금액을 원고의 과오납금 환부신청에 따라 1998. 3. 12. 환부 받았다.
- 한편 원고는 비회(飛灰) 정제 설비(이하 ‘이 사건 설비’라고 한다, 이 사건 토지 등 매립지가 아닌 기존 △△△화력발전소의 부지인 같은 리 952외 8 필지 지상에 위치하고 있다)에 관련하여 ① 1997. 11. 4. 비회 정제 주제어건물 2층 각 층 288㎡(전기실, 화학실험실, 사료조제실, 사무실 등, 과세표준 금 324,182,456원)을 1997. 10. 10. 취득하여 취득세 금 6,483,640원, 농어촌특별세 금 648,360원 등 합계 금 7,132,000원, ② 같은 달 6. 비회 정제 싸이로(SILO) D22M, H40M의 건물 2동 및 배수시설(과세표준 금 2,388,466,512원)을 역시 1997. 10. 10. 취득하여 취득세 금 47,769,330원, 농어촌특별세 금 4,776,930원 등 합계 금 52,546,260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 그런데, 경상남도지사가 1998. 4. 27.부터 같은 달 29.까지 원고 산하 △△△화력본부에 관한 세무조사를 벌인 다음, 같은 해 5. 29. 지방세법 제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



한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그 중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설비 부분에 관하여 불복하여 같은 해 6. 15. 경상남도지사에게 같은법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7. 16. 불채택 심사결정이 내려졌다.

- 이에 피고는 1998. 8. 11. 부지매립공사비 외 나머지 호안축조공사비 및 연료하역부두축조공사비 등을 모두 더한 금 35,929,446,259원을 총 매립면적 171,534㎡(이는 원고의 당초신고시의 면적에 해양수산부에 귀속된 하역부두 즉 위 900의 16의 면적 9,153㎡를 더한 것이다)에 대한 이 사건 토지 면적 153,212㎡으로 안분하여 산출한 가액인 금 32,091,727,122원을 이 사건 토지의 과세표준으로 새로이 정하는 한편,
 - 비회를 포집, 분리, 이송, 출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기계장치류가 구축물인 싸이로의 부속물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 금 12,730,129,420원을 이 사건 설비의 당초 과세표준에 추가하여 취득세 등을 산출하다 보니,
 - 원고가 취득세 등을 과소 신고·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10항, 제82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은 원고의 신고와 같은 준공인가일이 아니라 그 사용허가일인 1997. 5. 7.이므로,
 - 그에 따라 산정한 취득세 등에서 기납부된 취득세 등을 차감한, 취득세 본세 금 632,874,990원, 취득세 가산세 금 158,494,800원(합계 금 791,369,790원), 농어촌특별세 본세 금 63,287,490원,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금 7,924,730원(합계 금 71,212,220원) 등 총 합계 금 862,582,010원을 같은 달 31.까지 이를 납부하라는 내용의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 관련규정

- 지법 제111조 제1항·제5항
- 지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 지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2 제2호, 제76조 제1항

□ 심급내역

- 대법원 : 상고기각(원고승)
- 부산고등법원 2000. 7. 7. 선고 2000누529 판결 : 항소기각(원고승)
- 창원지방법원 1999. 12. 14. 선고 98구2857 판결 : 원고일부승

○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두7018 판결[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5항 제3호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장부상 가액을 사실상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아 부지매립공사, 호안축조공사 및 연료하역부두축조공사 등을 시행한 후 매립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위 각 공사비가 구분되어 있어 취득대상 매립지에 대한 부지매립공사비를 알 수 있다면 당해 부지매립공사비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축조된 호안제방 및 연료하역부두가 매립된 토지의 조성 및 유실방지를 위하여 필요불가결하거나 또는 매립된 토지의 편익에 제공되는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그 호안제방 및 연료하역부두의 부지가 공유수면매립면허의 인가·승인조건에 따라 공유수면매립공사의 준공과 동시에 그 소유권이 국가로 귀속되는 이상, 위 각 공사비를 모두 합한 총 공사비를 매립된 모든 토지의 총 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과세대상 매립지의 면적에 상응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누72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유수면매립 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의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이하생략)

※ 관련법령

<지방세법>

○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중 략)

⑤ 다음에 계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2. (생략)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하생략)

<지방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82조의3(특수한 부대설비의 종류와 범위)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



로 한다(이하생략)

※ 참고사항

이 판례와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이 있었으며, 이를 종합해보면, 법인 등이 공유수면매립공사에 의해 취득한 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동 부지매립공사비가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구분 산출되는 경우는 그 공사비를 기준으로,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 공사비를 기준으로 안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세정13407-22(2001. 1. 8)호 :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기부채납 시설을 별도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전체 공유수면매립공사 중 일부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전체 매립토지에 소요된 총 공사비에서 기부채납한 토지에 소요된 비용만을 별도로 구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총 공사비를 당해 면적비율로 안분하여야 함.

○ 세정13407-1258(2000. 11. 1)호 :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여 조성된 공유수면매립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총 공사비에서 기부채납토지 조성에 있어 분리산출 가능한 당해 공사소요비용을 제외한 가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임. 

